

제389회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1년7월14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가. 교육부 소관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45)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39)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6)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2)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77)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74)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75)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48)
1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49)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50)
1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51)
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80)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18)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29)
1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31)
1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39)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40)
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51)
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5)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7)
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70)
2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74)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3)
2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99)
2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2)
2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75)
29.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6)
30.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안번호 2109596)
3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97)
3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04)

3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56)
3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65)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66)
3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69)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1)
3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4)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6)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93)
4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36)
4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65)
4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72)
4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44)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97)
4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61)
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20)
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57)
4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62)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86)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20)
52.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의안번호 2110148)
5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82)
5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84)
5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41)
5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42)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99)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4
가. 교육부 소관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5) 4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39) 4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6) 4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2) 4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77) 4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4) 4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5) 4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8) 4
1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9) 4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50) 4
1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51) 4
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0) ... 4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8) ... 4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9) ... 4

1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1)	4
1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9)	4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0)	4
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1)	5
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5)	5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7)	5
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0)	5
2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4)	5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3)	5
2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9)	5
2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2)	5
2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75)	5
29.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6)	5
30.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6)	5
3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7)	5
3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4)	5
3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6)	5
3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5)	5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6)	5
3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9)	5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1)	5
3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4)	5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6)	5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3)	5
4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6)	5
4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5)	5
4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2)	5
4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4)	5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7)	5
4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1)	5
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0)	5
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7)	5
4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2)	5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6)	5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0)	5
52.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8)	5
5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2)	5
5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4)	5
5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1)	5

5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2)	5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9)	5

(13시44분 개의)

니다.

○위원장 유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회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서 일곱 분 위원님들의 개회 요구에 따라 개최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곱 분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오늘 소집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2건의 법률안이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전체회의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2일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 이후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이 80건을 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의2에서는 법률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45일이 지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 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5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 규정을 둔 점 그리고 통상 예결위의 소위심사 이전까지 추정 예비심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45일 자동상정 조항에 따라 대략 5월 말까지 회부된 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과 예산안의 심사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간사님들 간에 앞으로 소위원회 심사일정 등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특별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나눠 드린 의사일정의 순서를 바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사일정 1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그다음에 의결하고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약간 변경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종철 차관은 예결위 참석을 위해서 1시 50분에 이석하게 됐다는 점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이 허락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가. 교육부 소관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5)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39)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6)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2)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77)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4)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5)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8)

1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9)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50)

1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51)

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0)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8)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9)

1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1)

1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9)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0)

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1)
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5)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7)
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0)
2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09374)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3)
2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499)
2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502)
2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75)
29.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9586)
30.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596)
3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9597)
3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4)
3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6)
3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5)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6)
3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9)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1)
3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4)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9676)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9693)

4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736)
4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5)
4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2)
4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4)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9897)
4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1)
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0)
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7)
4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0062)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6)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0)
52.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110148)
5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2)
5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4)
5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0241)
5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0242)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9)

(13시48분)

○위원장 유기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 57항까지 5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항은 잠시 후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입니다.

박찬대 법안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법안심사소위원장 박찬대입

니다.

지난 4월 27일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의결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의원, 정찬민 의원, 궤상도 의원, 김철민 의원, 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대학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실시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법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 여건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의결한—윤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한—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연동하여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홍 박찬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미 꼼꼼하게 축조심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전체회의에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6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안하는 법안과 관련해서 재정 수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경우에는 당초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비교할 때 다시 비용추계서를 의뢰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채용을 공개전형으로 실시하고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게 하는 등의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유은혜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신규 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은혜 장관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유기홍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과 전문대 학생의 취업 지원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학기 대면수업 확대에 따른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대학에 방역인력을 지원하고 금년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의 실습시간 부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2만 4000명의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구직난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을 한 학교당 1명씩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채용하여 실습수업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사회 진출 준비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2학기 대면수업 확대에 대비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학 방역인력 2000명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문대학 졸업자 3만 명을 대상으로 취

업을 위한 자격증 응시수수료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70만 원씩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경기 회복으로 인한 내국세 초과 세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365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 회복 추진 및 미래교육 수요 대응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4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조 4008억 원 증액된 83조 299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부문별 편성 현황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예산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58조 7352억 원 대비 6조 3658억 원 증액된 65조 1010억 원입니다. 보통교부금 6조 1748억 원과 특별교부금 19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2021년 제1차 추경예산 11조 2124억 원 대비 54억 원 증액된 11조 2178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2021년 대학 방역인력 한시 지원 사업 5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 예산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1조 534억 원 대비 296억 원 증액된 1조 830억 원이며,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 한시 지원 215억 원, 고졸 취업 희망자 취업 역량 강화 지원에 60억 원, 직업계고 실습 지원 멘토링 사업에 21억 원으로 총 3개의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일반 부문과 기초생활 보장 및 공적연금 부문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립니다.

모쪼록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보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유은혜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셨습니까마는 사실은 지금—제가 전에 대정부질문에서도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교육 회복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또 새로운 법률안들을 통해서 교육 회복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칼리지를 무상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코로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교육 회복 프로젝트로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에 비하면 이번 추경에서의 교육 분야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부가 나름으로 노력해서 지금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경과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관례에 따라서 원하시는 위원님들 대체토론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민정 위원 최근에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신 윤석열 후보님의 부인과 관련해서 부실 논문이 박사학위의 근거로 되고 또 이 박사학위를 받은 걸 기초로 해서 다른 대학에 교수로 강의를 5년 이상 나갔고 본인 스스로 그 대학의 다른 학생의 박사학위 심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얼마나 부실한지 그다음에 표절과 관련해서 웃지 못할 유지(Yuji) 논문이라는 별명, 별칭까지 얻게 됐는데 아마 교육부장관님도 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강민정 위원 그래서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우리 대학의 학위 인증 과정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 이런 문제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전북대에서 이말레 교수가 자기 남형제들과 지인을 자기 제자의 학위 논문에서 이름을 빼고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도 최근에 기사화됐고, 그다음에 경기대에서 보면 관광경영학과 교수들이 관광경영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학회 학술지에다가 서로 품앗이해 주거나 심사위원 명

의를 도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경영학과 교수들이 이것을 실적으로 전임교수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최근 언론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폭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과 전북대의 사례와 그다음에 경기대의 사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학위인증시스템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을 관리하는 책임이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경기대 학회지도 그렇고 김건희 씨의 논문이 실린 학회지도,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리하는 KCI 등재학술지 거기에 논문이 실린 건데 그러면 결국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이 지금 도대체 학회와 학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인 부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정과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학이 지금 300개가 넘는데 이 대학들이 학위 장사하는 곳이나 이런 국민적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 사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고등교육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논의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했는데 고등교육 위기 해결을 위한 지원을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일련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민대하고 경기대의 경우에는, 지금 전북대 같은 경우는 징계위를 재소집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대·경기대 학회와 학술지 그리고 박사학위 인증 과정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교육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연구재단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학회와 학술지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서 학문 사회와 대학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일단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육부가 지금 국가 교육 회복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교육 회복 종합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강민정 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PT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저기 보면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우울증의 정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뒤의 PT는, 또 하나 자살 생각 같은 경우는 아주 놀라운 정도의 가속도가 붙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저게 성인들인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작년 이후 거의 2년 가까이—원격수업들을 굉장히 장기간 했고 선생님이나 학교의 돌봄을 제대로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훨씬, 우리가 저 그래프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성인보다 심각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국가 교육 회복 프로젝트는 아직 계획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서 191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3%가 책정이 됐는데 1910억 원의 일부하고, 그다음에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는 58조의 예산이 추가로 추경의 결과 분배가 될 텐데 거기에서 국가 교육 회복 프로젝트라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학생 정신건강과 신체건강과 관련된 예산을 특정해서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조를 썼더라고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문서로 정책과 관련해서 특정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출해 드릴 테니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대와 경기대 특정감사는 꼭 해 주실 거지요? 이게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국민대의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사 결과와 그 과정에서 필요한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후

속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 경기대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경기대와 전북대의 상황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토론회 주십시오.

○정청래 위원 장관님, 80년대에 학교 다니셨지요, 대학?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정청래 위원 그때 유행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여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청래 위원 안 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정청래 위원 하여튼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여사……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정청래 위원 요즘 유행하는 것을 여기에 빗대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석사 위에 뭐가 있지요? 박사가 있겠지요. 박사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

○정청래 위원 모르시는군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복사요?

○정청래 위원 예.

김건희 씨 석사·박사 학위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멤버 유지(member Yuji)’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청래 위원 ‘Yuji’ 이게 유지라는 뜻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뭐……

○정청래 위원 본문은 차치하더라도 논문 제목에 ‘member Yuji’ 이렇게 돼 있는데요. ‘Yuji’ 이것은 구글 번역기를 돌렸을 때 번역기가 잘못 판독하거나 인식하지 못했을 때 그냥 한글로 나오

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우리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지요, 지금. 도대체 석사 논문 제목이 유지가 Yuji로 돼 있는데 그 석사학위 논문이 통과됐어요. 해외 토픽감이지요.

그리고 또 박사학위 논문은 자기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거의 배껴서 했다고 건너편에 있는 강민정 위원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석사·박사 논문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으로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진실성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되고 국민대에서 지금 그것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교육부에서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시거나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직 없습니다.

○정청래 위원 거기에 대해 일절 보고받아서 안 됩니까, 교육부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보고를 받아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대에서 자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식입니다.

○정청래 위원 대학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는 권한이 교육부에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member Yuji’ 석박사 논문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저희가 어떤 경우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대학 내에서 우선 권한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체 조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외 없이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렇게 석박사를 받은 분이 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학위 논문 심사를 했다고 아까 강민정 위원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청래 위원 이것은 도둑이 경찰 심사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로도 채용되고 또 거기에 프로젝트 비용도 받았고, 그래서 강민정 위원 옆에 있는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 사기죄 아니냐? 공금이 유용된 것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처음 들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김의겸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청래 위원 서울대에서 ‘역겹다’ 교수가 사표를 냈더라고요,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이랬을 때 교육부에서 서울대에 취할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서울대의 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대학에서 문제가 있으면 교육부에서는 특별감사 권한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물론 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런데 국감 때 교육부장관이 단국대 특별감사, 종합감사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단국대, 계획 세워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청래 위원 1월 달에 얘기하실 때 한 3~4월 이면 할 것 같았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올해 안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이처럼 대학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부에서 손놓고 있거나 아니면 차일피일 미루거나…… 그러니까 ‘교육부 감사는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대학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따끔하게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손놓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사안이든지 엄정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외 없이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교육부의 건투를 빕니다.

○위원장 유기홍 정청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조경태 위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김 모 씨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에 KBS에서 탐사 연구한 것을 보면 국회의원 5명 중에 한 명 꼴로 석박사 논문 표절 의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역시도 석사·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그분들은 스스로 자백하고 자신들이 과연 그렇게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요.

또한 문제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보면 석사·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장관들을 많이 임명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인 정부를 내로남 불 정부라 하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청문 대상자였던 장관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야당에서 주장했을 때 묵살하고 그 사람들을 다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려면 우리 국회부터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분들부터 숙아 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직에 있는 장관들 중에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장관들부터 해임시키고 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공학박사 학위가 있으니까 제 논문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께 조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에서 그동안에 옥상옥의 위원회를 만들지 말자고 그토록 주장했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또 다른 옥상옥이다라는 그런 비판과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 관계자들이 업무를 태만하고 자기 일을 잘 안 하고 못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감시 기능이 있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는 제가 누누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영국에서조차도 부러워할 정도로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써 교육부의 활동을 또 옥상옥의 그런 차원에서 제약하는 것은 아닌가, 제한적으로 만

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과 조금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야당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홍 조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희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잠깐만요.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경태 위원님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당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뜨겁게 토론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20대 국회부터 따지면 12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저희가 20대부터 따지면 공청회를 세 번 했고 수십 차례의 법안 심사와 이런 것들을 거쳤지만 그것을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옥상옥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년 전부터, 지금 국민의힘의 선배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당 시절부터, 이회창 대선후보 때부터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그리고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모든 대선후보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위상에 대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바대로 선진국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범 사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국정과제로 설정해서 열심히 추진했던 것은, 우리가 늘 느끼는 바입니다만 교육부가 당면 현안 대응에 정말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 문제를 비롯한 중장기적인 과제 그리고 장기 비전 수립의 문제 그리고 충분한 교육 주체들의 거버넌스 이런 문제는 교육부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국가교육위

원회와 협력해서 역할 분담해서 풀어 나가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설립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시다만 다음 정부에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우려하셨던 대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또 일부에 편향되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말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권인숙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만 정경희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우선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국가교육위원회법 일방 통과시킨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은 오늘이 추경을 심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역대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 관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심의기구였느냐 자문기구였느냐 하는 그 세세한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입법독주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해명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줬을 때에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협치를 하라는 뜻에서 만들어 준 것이지 거대 여당이 됐다고 해서 입법독주를 하라고 티켓을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21대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방적인 통과, 날치기 입법독주가 결과적으로 일어났고요……

○위원장 유기홍 정경희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신 거거든요.

○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들어 보십시오.

위원장께서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한마디의 사과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회의에 나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의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경 심사에 조속히 부응을 해서 우리가 하루빨리 심사를 완료해서 국민 여

러분의 어려움을 덜어 드려야겠다는 입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이미 추경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위해서 빨리 회의를 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추경 심사 외에 법안소위를 함께 확정하자면서 추경 심사 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저께까지도 제대로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가 어제 늦게서야 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구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건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1야당을 무시하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나 그다음에 제1야당과의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를 직전에 통보하지 않나, 이런 것이 제1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협치의 대상은커녕 의도적으로 제1야당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안이 국민적인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추경안을 상정하는 것을 제1 의사진행 안건으로 두자고 한 것이었고요.

지금 또 회의를 듣다 보니까 추경과 관련 없는 우리 야당, 범야권의 특정한 대선후보에 관한 비방을 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추경안에 참석은 했지만 더 이상 듣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왕 상정된 추경안이니까 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심사 의견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상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정경희 위원님, 매번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정경희 위원 그렇게 하도록 여당이 그렇게 하신 거지요.

○위원장 유기홍 아니, 여야 간사 간에 의사일정 합의를 하면 제가 존중 안 한 적 있습니까? 여야 간사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니까 위원장이 개입하는 겁니다.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까, 위원장이?

○정경희 위원 저희가 할 수 없도록 의사……

○위원장 유기홍 아니, 법안이 지금 80건이 밀려 있고 4월 달에 의결할 법안을 의결하는 것조차 반대하는데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퇴장하고.

○정경희 위원 간사 간에 협의하십시오.

○위원장 유기홍 퇴장이 능사입니까?

○정경희 위원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지요.

(일부 위원 퇴장)

○박찬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박찬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찬대 위원 상황이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야 간사 간에 일정과 그다음에 상정해서 의결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상적으로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야 간의 입장 차이라든가 정책의 방향성 때문에 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1년 넘게 교육위를 진행하면서 합의 없이 처리한 건이 있었나라고 봤을 때 딱 1건 있었지요. 그것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심사 의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했을 때 아무런 결정을 못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안전조정위원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안전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결했던 그 부분들은 법적인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추경이 급박한 것에 대해서 여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또 추경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집행을 통해서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급박한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만을 심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야당의 주장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것을 전제로만 해서 교육위가 열려야 된다고 하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실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주장은 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결국은 상임위에 대한 합의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제 국민의힘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급박한 추경에 대해서 빠른 처리가 촉구되는 내용이었습니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부응을 해서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가 전체회의를 열게 되었고요, 추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추경안 상정이 비록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합의에 이르고 그러고서 얻 것은 아니지만 급박한 추경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안전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했던 부분은 국회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급박한 추경을 심의하고 그것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법안이 되든 그다음에 예산안이 되든 또 국정감사가 되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약속을 드리고요. 하지만 모든 부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합의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가 4월 이후에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한 달에 세 번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틀 정도, 그것도 오전에 한 2시간 정도씩밖에 열릴 수 없었고요. 이번 달에는 법안소위는 무조건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을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가 쉽사리 합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7월 달에 법안소위를 우리가 못한다면 8월 달에는 법안소위를 열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약속해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그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일방적인 여당의 탓으로 일관되게 탓하지 마시고 우리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법을 준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급박한 민생법안 그리고 급박한 추경에 대해서 우리 여당은 늘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려

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퇴장이라든지 여야 간의 이런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여야 간사님들 간의 합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무조건 야당의 입장대로만 진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교육위원장의 책무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야 간사님들 간의 합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또 야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권인숙 위원님께서 토론 신청을 하셨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권인숙 위원 장관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목표 중 하나로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권인숙 위원 이 학력 차별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알고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 저는 두 번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이 법의 학력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서 교육부가 ‘학력은 개인의 노력의 문제이므로 합리적 차별 요소다. 따라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법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도 대정부질의를 하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장혜영 의원께 답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검토의견을 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부가 그런 검토의견을 내면서 피력하고 싶었던 내용은 차별의 예외를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이미 법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 차별의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구체화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명료히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모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 예외가 어떤 것들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를 들면 다른 법안에, 그러니까 교육기관 입학 시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학력 기준이 있는 데요, 그 학력 기준을 이 차별의 예외 조항으로 둘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러니까 이미 다른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외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인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인숙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제시하지 않고, 교육부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이 차별 형태와 관련해서도 교육이 중요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학력에 의한 차별이 심하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56.8% 정도가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고.

그다음에 500명 이상만 보더라도 대졸이 100이면 고졸은 70만 원을 벌고 그다음에 100명에서 299명 규모에서는 대졸이 100을 벌면 고졸이 59만 원을 버는 이 현실만 보더라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교육부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의견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낼 수가 있었던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수정된……

○권인숙 위원 그러니까 예외 조항의 문제다라고 해서 내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때 검토의견을 낼 때,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에 아마 그 검토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관까지를 포함

해서 저희 입장으로 정리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장혜영 의원 대정부질문 때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시 파악하겠다 답변을 드렸고, 오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수정 검토안을 낼 것이고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교육부가 어느 정도로 보수적인가를 보여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학력 차별 철폐라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인데 그 정신조차 인지하지 않으면서 교육부의 입장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은 아닌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의 의견을 보여 주는 건데 그게 그냥 장관은 모르고, 뭐 모를 수도 있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만약에 그때 제대로 제시가 안 됐다면 계속 교육부는 이 관점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아시겠지만 법안이 제출이 되면 관련한 여러 부처의 검토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관련한 이런 입법에 대해서 그런 검토의견이 나간 것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 왜 이렇게 나갔는지를 좀 더 살펴봤는데요. 20대 국회 때도 이 법안이 제출이 돼서 검토보고서가 나간 적이 있고……

○권인숙 위원 그렇지요. 김부겸 의원이 내셨고, 장관님도 그때 공동발의를 하셨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때 학력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권인숙 위원 예, 학력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것이 법안이 또다시 발의되고 검토보고서를 내야 하다 보니까 그때 제출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시 제출되는 이런 과정이 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인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말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하지만 이런 식의 의견을 그냥 달아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교

육부라고 하면 이것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 그 입법적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교육부의 입장으로 학력이 그렇게 해석돼서 검토 보고서가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정의견을 내는 것이고요. 수정의견을 내서 이 법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어떤 것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는 문제 인식은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인숙 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내부 문화나 내부 구조를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홍 권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순서인데요, 제가 잠깐 공지 말씀 하나 드리고 이탄희 위원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광상도 예결소위 위원장이 내일 아침 10시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신 결과로 아는데 결과가 다행스럽게 아마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내일 예정대로 예결소위가 열리게끔 된다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전 예결소위 결과를 봐 가면서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예결위 일정을 우리가 감안해서 내일 오후에 예결소위 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내일 오후에 전체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일정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이탄희 위원 장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서울대 청소노동자 관련해서 정청래

위원님 질의나 또 차별금지법 관련된 권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장관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조금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좀 뜯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왼쪽에 고인이 되신 청소노동자의 사연이 나옵니다. 이분이 2019년 10월 31일 날 만 57세로 무기계약직 취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들 같으면 정년퇴직할 나이에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 보겠다고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는 취업 조건이 평일 8시간 근무, 주5일 그래서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는 일은 40시간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925동을 혼자서 관리를 하는데 이 기숙사 925동이 이런 건물입니다. 건물 전체가 4층이고요, 공용화장실만 8개가 있습니다, 샤워실이 4개고요.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리고 서울대는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썼어요. 이 100ℓ 봉투가 일명 청소노동자들에게 골병 봉투라고 불리우는 봉투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안 쓰고 있는 봉투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쓰레기봉투를 들어 보이며)

이게 크기가 이렇게 크고요. 이게 가득 차면 무게가 30kg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 20리터짜리 정수통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런데 서울대에 이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쓰게 하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손으로 끌고 다녔겠지요. 그리고 4층이니깐 이 봉투 하나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딱 차면 한 손에 이것을 끌고 두 번째 봉투를 열어요. 그래서 2개 봉투를 손으로 끌고 건물 4개 계단을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쓰레기만 치우느냐? 그게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또 재활용품수거, 샤워장 곰팡이 청소, 야외 제초 작업 이런 것을 이분이 다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힘들어서 평소에 주변에 같이 있던 동료들한테 진술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소 힘들다고 동을 바꾸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샤워장 곰팡이 청소를 특히 너무 힘들어했다. 도랑 치우고 제초 작업하는 것 어려워했다. 자괴감을 느꼈다. 평소 하던 범위에

서 더 타이트하게 일을 해야 하는 부담감들이 있었다’ 이런 상태였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2019년에 계약할 때랑 2021년에 일할 때랑 업무량이에요 폭증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이미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2021년에 두 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랑은 비교가 안 되는 양의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전관리팀장이라고 하는 분이 6월 1일 날 인사발령이 돼서 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다음 날 미화노동자 회의를 소집해요. 그러면서 작업복장으로 온 사람들 앞으로 점수 1점씩 감점합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다음 주에 또 2차 회의를 해요. 이번에는 시험을 봅니다. 6월 16일 날, 일주일 뒤에는 또 시험을 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실래요.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 필기 시험지를 한번 구해 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시험지예요. ‘조직의 정확한 명칭을 작성하세요’, ‘팀의 정확한 명칭을 작성하세요’. 이게 청소노동자들에게 왜 필요한 지식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필기 시험이라는 방식 자체도 부적절합니다. 이것 보면 점수 30점 써 있지요. 10개 문제에서 3개 맞은 거예요. 이분이 물론 고인은 아닙니다만 다른 분이시긴 한데 30점 맞고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여기 글씨 빼뽀빼뽀 써진 것을 보면 장관님도 불편하시지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다음 주에 또 시험을 봐요. 난이도를 더 높입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가 한자로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영어로 쓰라는 거고요. 이 시험지를 받아 본 노동자들이 어떻게 느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전관리팀장이 그다음 주에는 아예 청소검열팀이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 상태를 검열하겠단다. 그다음에 미화원 근무성적평가서 도입하겠단다. 그리고 외주를 일부 주고 인건비 삭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인이 스트레스 호소를 하다가 5일 뒤인 6월 26일 날 토요일인데 출근해서 4시간 일하다가 오전 11시 48분에 딸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몇 분 뒤에 돌아가십니다. 이 사건의 내용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죽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장관님이 뭘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것을 느껴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서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모습 마치 설국열차의 다른 기차 칸에 두 명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기시험이라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지식을 측정하겠다는 게 상대방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 관리팀장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처해 있는 노동환경 현실이 어떤 건지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본인이 관리팀장인데.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압박감을 주는지 파악도 못 하고 계속 밀어붙이다가 결국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여러 단체들이 요구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유가족, 노조 또 학생회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런데 요구사항이 놀랍게도요 다 같아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노동자와 학교 당국이 완전히 두 개의 다른 세상 속에서 계속 평행선을 달려왔다는 것을 이 서울대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특별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까지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하라고 강한 권고를 하실 의지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협의체 구성을 포함해서 저희가 어떤 일부터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자면 지금 조사도 인권센터 조사에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시면요 학교 당국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그리고 관악학생생활관장, 이런 사람들이 운영위원이에요. 이해당사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중립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겠어요. 이대로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방법을 찾아서 강력히 권고하시기를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페이스북 통해서 미리 공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으신 반응이 끔찍하다는 거예요.

뭐가 끔찍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시험만능주의라는 걸로 무장을 하고 정서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 공감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로 상대방을 압박했을 때 그게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결국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끔찍하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차별금지법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배제하는 행위’, 차별이라는 게 분리·구별·배제예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분리·구별·배제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단순히 학력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다르게 차별해서 벌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아예 특정 집단 자체를 분리하고 구별하고 배제했기 때문에 서로의 생활 근거, 사고의 근거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 차별금지법이기에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까 재검토한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믿겠습니다마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니, 저희는 이미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의 특히 학력 조항에 대해서 그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이견이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인 이유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기존에 이미 법안에서 규정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 기준을 정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런데 장관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이 나왔다고 하면 사실 이게 논제가 안 됐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이탄희 위원** 애초에, 최초에 교육부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서가 나갈 때 제가 그것을 점검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토 달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경각심을 가지고, 이 정도 상황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들의 동의 수준도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고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기홍** 이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회의 개최 전에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관련된 내용—청소노동자 돌아가신 문제와 그 이후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저를 방문했을 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체로, ‘역겹다’라는 발언을 했던 학생처장, 이분이 행정대학원 출신이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팀장입니까, 그분도 행정대학원 소속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의 일탈로 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서. 아마 개인의 일탈로 처리하고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물론 학생처장의 언동은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문제기 때문에 사표 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학생처장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 했던 언동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지 않으면 아마 더 불어민주당 위원들께서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한 주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서울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에서

도 비정규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2019년인가요, 청소노동자 한 분이 이미 돌아가신 이후에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문제가 몇몇 개인의 일탈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책임질 것은 아니고 또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언동과 그리고 차별, 모욕을 가했던 그 사람이 명백하게 책임을 지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제가 서울대 부총장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도 정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인권센터의 핵심 책임자들이 법률가 출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지나치게 법률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도 한편에서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사실 오늘 서울대를 출석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서울대의 조치를 봐 가면서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영덕 위원** 위원장님, 짧게 의사진행발언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기홍** 예.

○**윤영덕 위원** 야당,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퇴장하신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게 한두 차례도 아니고요 이게 관행이 되는 것인지 아무렇지도 않게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이런 것이 습관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통과시킨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에서 이미 세 차례 이상의 법안소위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들어집니다. 법률 위에 관행이나 관례, 관습이 있을 수 있지 않다고 보고요.

간사 간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간사 간 협의라고 하는 것도 법을 무시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국회법이 규정한 법안소위 3회 이상 개최에 토대해서 시간과 안전을 협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안소위 개최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 간 협의는 존중하시되 최소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용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위원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유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위기를 넘어서서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육부에서는 교육 회복 그리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번 추경안을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알다시피 코로나19로 교육에 있어서 초·중·고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학습 결손이 커지고 있고요. 전문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정말 학교 한 번 안 가 보고 졸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직업계고 예비 졸업생들도 취업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질의에서 교육 회복을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학습 결손은 물론이고 정서적 결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시·도교육청별로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 회복을 위한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각별히 교육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가 7월 말경이면 이 사업을 구체화해서 발표할 예정에 있고

요.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부의 특교와 또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서 핵심적인 과제는 차이 없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덕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경안에서 전문대 학생들, 직업계고 예비 졸업생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러면 4년제 대학생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이 없었나,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는 교육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우리 부총리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지만 등록금 문제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기대했던 대학 생활을 제대로 누려 보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결손도 있습니다.

4년제 대학 학생들을 위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교육부 차원에서 보상할 방안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도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특히 등록금 문제, 그러니까 학비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거비나 생활비나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많이 겪고 있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경제적 지원이 가장 우선 필요하다는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경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추경 편성에 담지는 못해서 저희도 좀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고 본예산 편성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윤영덕 위원 올해 1차 추경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그러한 부분이 담겨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이후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이나 이런 데서 대학생들의 어려움이 국가 차원에서 좀 보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서동용 위원** 부총리님, 코로나19로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장애 학생은 유독 힘들었습니다.

교육부 이번 추경안에 실업계고, 전문대 학생들의 취업지원 예산안이 담겨 있던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담겨 있지 않더라고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로 줌이나 e클래스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대면 수업 플랫폼 대부분이 문자, 수어, 음성통역 이런 편의 제공들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 학생들이 원격수업 때마다 학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속기나 대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또 수업은 비대면으로 하다 갑자기 시험은 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동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대개 부족합니다.

2021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예산이 그전보다 오히려 감소했었고요. 교육부 담당자가 저희 의원실에 ‘증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학의 재정 여건이나 행정 절차의 복잡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올해 추경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위기가 닥치면 피해의 충격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회 취약계층일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할 텐데요. 교육부가 장애 학생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더불어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혹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도 예결위 차원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그리고 저도 서울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구성원이 목숨을 잃으면 책임소재를 떠나서 먼

저 우선 아픔을 표현하는 게 사람의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돌아가신 지 20여 일 만에 학생처장의 개인적인 글이 논란이 되자 서울대는 뒤늦게 공식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관계자의 안하무인적 태도 이것은 모든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는 자의적인 관리행정이 가능했던 것, 이게 서울대가 총장의 임면권을 산하 기관장들에게 무분별하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별적 고용구조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부총리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작년 국정감사와 지난번에 제가 대정부질문을 드렸을 때도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준비 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준비기간이 너무 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시겠지만 저희가 감사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1년에 꼭 필요한 감사계획들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또 그때그때 사안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신속하게 감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감 때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올해 내에 서울대 종합감사에 대한 계획들은 세우고 있고요.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19년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당시에 그 일을 담당했던 한 의원으로서 갖는 굉장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이 사안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서울대학교에 있어서 차별적 고용구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면권을 총장이 가지고 있는데 산하기관장한테 대부분 위임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람 뽑고 마음대로 해요. 책임지지 않아요, 누구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제도개선 사항이 필요한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작년에 국감 할 때 지적하니

고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 밖에 저희가 올해 추경에 증액 요청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철민 위원 장관님,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에 대한 문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니까 저도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아 온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도 국민들이니만큼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전달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수당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6월 15일에 행정예고하고 7월 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지금 결정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 기준을 유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지급 기준이, 작성 방법 또 지침 등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각 유치원마다 어떤 유치원은 지급 기준을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놓은 유치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유치원들은 아예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서 아마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공립유치원 또 학교 교원들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봉급들이 공개되고 있으며 또 사립학교 교원은 보통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또 학부모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교육부가 만든 지침을 보니까 원장·원감은 물론 교사들의 월평균 봉급의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도록 하고 이를 유치원알리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유치원에 있는 원장·원감·교사·

직원이 매달 봉급과 수당으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 개인의 인권, 사생활 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개인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 방법, 공개 범위 등을 조정할 때 그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다양하게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 지침을 제정하는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저희가 행정예고는 완료가 됐는데 또 이후에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와 같은 심사 절차들이 남아 있고 행정예고를 한 것은 이것을 예고하면서 당사자들이나 여러 국민들의 다른 의견들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까지를 포함해서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한다는 그 취지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반영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고 알리미를 통해서 무슨 유치원의 어떤 선생은 얼마 받고 그런 자기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현장의 의견까지 잘 수렴해서 실질적인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장님, 잠깐 회의 마치기 전에 정청래 위원님 앞서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단국대 감사와 관련해서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글썄요, 저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감사는 완료가 됐고요, 3월에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그 감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심의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즉 사안별로 검토해서 처분을 내리는 과정이 조금 길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 예상으로는 한 8월 말경이면 1차 감사 결과를 학교에 통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제 답변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은혜 장관님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공지 말씀을 드린 대로 내일 10시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전체회의 소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하셔서 내일 오후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金炳旭
김철민	박찬대	배준영	서동용
유기홍	윤영덕	이탄희	정경희
정청래	조경태		

○청가 위원(2인)

곽상도 정찬민

(밑줄 친 위원은 코로나19 방역관련 권고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함)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전문위원	박재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유은혜
차관	정종철
차관보	이상원
기획조정실장	김문희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은옥

학교혁신지원실장
정책기획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산학협력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교육복지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국가교육회의기획단
기획조정관

이	상	수
황	성	환
신	익	현
설	세	훈
김	일	수
함	영	기
오	석	환
정	병	익
박	지	영

【보고사항】

○위원 개선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법안심사	강득구 서동용 윤영덕	권인숙 김철민 이탄희	더불어 민주당	2021. 7. 5.
예산결산 기금심사	권인숙 김철민 이탄희	강득구 서동용 윤영덕		

○청원 회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21. 6. 22. 전희영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6월 22일 회부됨